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워크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개편내용 소개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2009. 02. 19

발표자 : 김해도 (한국과학재단 성과관리팀장)

한국과학재단

발표순서

- I. 들어가며
-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법제
- III. 주요 개념의 이해
-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 VI. 국가R&D 지재권 관리 주의사항

한국과학재단

I. 들어가며

최근 정부가 R&D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개편

2008년 한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2회 개정 (5월 27일, 12월 31일)

<2008년에 추진된 주요 개선 사항>

- ① 연구비 집행 및 관리제도 개선(비목구조 개편)
- ② 연구결과와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대학기술료 정부반납제도 폐진)
- ③ 사업관리 절차 개선(대응자금, 간접비)
- ④ 연구기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샘플정산, 제재조치 강화)

주요 부처가 R&D관리규정 간소화 추진

교과부

기존 12개 규정 폐지 → 1개 규정으로 통합('08. 7.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지경부

기존 36개 규정 폐지 → 1개 규정으로 통합('08. 12. 29)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선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법제

1. 일반적인 법령체계

구분	법령			행정규칙
유형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제정주체	입법부	행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효력범위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음			소속 공무원에게만 구속력이 있음
예시 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규칙	기초과학연구 사업처리 규정
예시 2	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법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법제

구분	전 부처 R&D사업에 공통 적용 (기본법/일반법적 성격)	개별 부처 R&D사업 적용 <예시> (개별법/특별법적 성격)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연구진흥법(교과부) - 원자력법(교과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지경부)
행정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과부장관 훈령)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경부장관 고시)

3

한국과학기술재단

III. 주요 개념의 이해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3. 참여기관
4. 연구협약
5. 기술료

4

한국과학기술재단

III. 주요 개념의 이해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적 개념 (광의)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지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정부예산 및 기금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사업

법규적 개념 (협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

➡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 2

III. 주요 개념의 이해

2.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등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 지경부는 "주관기관"이라 함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의2호)

III. 주요 개념의 이해

3.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의3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의4호)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III. 주요 개념의 이해

주의사항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 **전담기관** :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전문기관과 동일 의미
- **참여기관** :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과 유사한 의미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III. 주요 개념의 이해

4. 연구협약

● 연구협약의 의미

“**연구협약**”이란 국가 R&D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기관(연구자)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문서화하여 당사자간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개별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구속력(Guideline)과 안정성 확보의 수단**
-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협약서 내용)

III. 주요 개념의 이해

4. 연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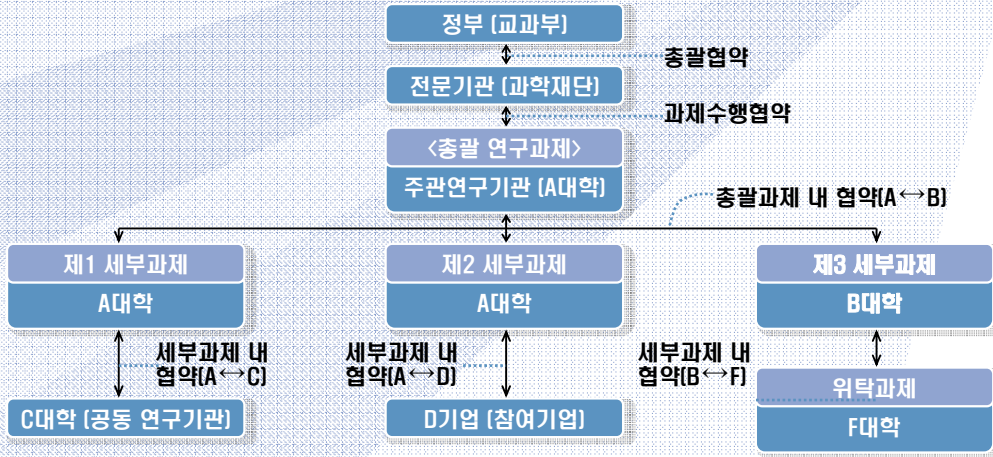
● 연구협약의 형태

- ① **총괄협약** ·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② **과제수행 협약** · 중앙행정기관(or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③ **총괄과제 내 협약** ·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 ④ **세부과제 내 협약** · 주관연구기관(or 협동연구기관)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III. 주요 개념의 이해

4. 연구협약

● 연구협약 체계도 (예시)



III. 주요 개념의 이해

4. 연구협약

● 주의사항

Case 1

A대학 우수연구센터(SERC)에 B대학 C교수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동 센터과제에 대한 B와 C의 권리/의무는 ? <단, A와 B간에 연구협약서가 없음>

- ◆ B의 권리와 의무 : 해당 사항 없음 (법률관계 불성립)
 - ◆ C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연구비 사용, 연구결과로 기술료 발생시 보상금 수령
 - 의무 : 계획대로 연구수행, 연구결과 제출, 연구비 정산 등
 - 법적 지위 : A대학 SERC 참여연구원
- ※ 센터과제 수행결과로 C가 산출한 모든 성과물은 A대학에 귀속

III. 주요 개념의 이해

4. 연구협약

주의사항

Case 2

A대학이 수행하는 특정기초연구과제에 B대학 C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경우 동 과제에 대한 B와 C의 권리/의무는 ? <단, A와 B간에 연구협약서가 없음>

- ◆ B의 권리와 의무 : 해당 사항 없음 (법률관계 불성립)
 - ◆ C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연구비 사용, 연구결과로 기술료 발생시 보상금 수령
 - 의무 : 계획대로 연구수행, 연구결과 제출, 연구비 정산 등
 - 법적 지위 : A대학 특정기초연구과제 참여연구원
- ※ 특정기초연구과제 수행결과로 C가 산출한 모든 성과물은 A대학에 귀속

III. 주요 개념의 이해

5. 기술료

실시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8호)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7호)

지정부의 정부출연금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3조제1호)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1. 제도개선 방향

2. 제도개선 결과(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

15

한국과학기술재단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1. 제도개선 방향

지재권 단독소유 강화

지식재산권 등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

▶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권 부여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2항)

발명자 소속기관 소유원칙 강화

다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시, 자체 연구성과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소유권을 인정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단서조항))

16

한국과학기술재단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기존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

<공동관리규정(2007. 2. 8 개정) 제15조제2항>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개정된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

<공동관리규정(2008. 12. 31 개정) 제15조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기관(제15조제1항)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공동관리규정 개정 전후 비교

2008. 12. 30
협약과제까지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 공동 소유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외 소유권 불인정

2008. 12. 31 협약과제부터
<최초 협약과제 기준>

- 주관연구기관 : 단독 소유 (참여기업에 우선실행권 부여)
- 협동연구기관(*) : 소유권 관련, 주관 연구기관의 지위부여
- 공동. 위탁연구기관 : 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단독 소유 가능
- 연구개발자 : 연구기관의 소유권 포기 시 개인명의 소유인정

※ 1. 소유권제도 개선내용 적용시점 : 개정 공동관리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년 최초협약과제부터 적용 (기존 협약과제는 개정 전 공동관리규정 적용)

2. 공동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교과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해당사업 처리규정에 지재권 취득과 관련하여 협동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준용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R&D사업은 대부분 준용규정이 없었음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 연구수행기관 유형별 소유권 취득 방법

주관연구기관
〈단독 소유〉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협동연구기관
〈단독소유〉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

참여기관
〈단독소유〉

주관연구기관(또는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소유〉

주관연구기관(또는 협동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동소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19

한국과학기술재단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 연구책임자의 소유권 취득 방법

① 취득조건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공공관리규정(2008. 12. 31 개정) 제15조제6항〉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② 취득절차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

연구수행 → 새로운 기술 발명 → 연구책임자가 결과를 소유기관에 발명신고 → 결과물 소유기관이 해당결과물의 소유권 취득을 포기 → 결과물 소유기관이 동 권리를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서면으로)

20

한국과학기술재단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 연구책임자의 소유권 취득 방법

③ 연구책임자의 범위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해석가능

총괄연구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과제책임,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해당 연구 개발 결과물의 완성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특허의 경우는 발명자로 등재되는 자연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직무발명 관계법규 준용〉

④ 연구책임자가 소유권 취득 후 라이선싱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등 기술료의 사용처를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 기술료는 정부의 통제 없이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순간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전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IV. 연구결과의 소유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 교과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9.1.6 >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1. 제도개선 방향

2. 제도개선 결과

23

한국과학기술재단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1. 제도개선 방향

정부반납제도 폐지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징수 기술료의 정부반납제도(20%)를 폐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

➡ 대학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적용

과기공제회 기금마련

국가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 징수 기술료의 9%를 과기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09 ~ '13, 1000억원)
(개정 공동관리규정 부칙 제2조제1,2항)

➡ 대학(KAIST, GIST는 제외)이 징수한 기술료는 해당 없음

24

한국과학기술재단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2008. 12. 30
징수 기술료까지

- 대학 : 정부반납 면제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20%이상
- 영리기관 : 30%이상

2008. 12. 31 징수기술료부터
<기술료 징수 시점 기준>

- 대학 : 정부반납 면제
- 비영리기관 : 정부반납 면제
(공제회 출연제도 한시 운영)
- 영리기관 : 30%이상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기관 형태별 기술료 사용조건 (개정 공동관리규정)

대 학
(제19조제1항)

- ① 과제 참여연구원 보상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② 나머지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 KAIST, GIST 등 특정연구기관은 공제회 출연금을 납부해야 함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제19조제1항, 부칙 제2조)

- 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상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②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2013년까지) : 정부출연금 지분의 9%
⇒ 전문기관에 납부하면 전문기관이 확인하고 납부
- ③ 나머지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영리기관
(제19조제1항, 부칙 제2조)

- ①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 지분의 30% 이상
⇒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 중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2013년까지 정부출연금 지분의 9%>
- ②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상 : 정부출연금 지분의 35% 이상
- ③ 나머지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기술확산 기여한 직원 보상금 : 지경부 R&D사업 규정은 징수기술료의 5%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교과부 R&D사업의 기술료 산정기준

2008. 12. 31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

기초과학 연구사업

-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합의에 따름
 -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음
- 관련규정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28조

특정연구 개발사업

-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
- 관련규정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9조
 - 필요시 기술료감면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0조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
- 관련규정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0조
 - 필요시 기술료감면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1조

V.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도

2. 제도개선 결과

교과부 R&D사업의 기술료 산정기준

2008. 12. 31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

-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
- 관련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 필요시 기술료 감면 : 상기 처리규정 제32조제4,5항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도 장관 승인사항임

VI. 국가R&D 지재권 관리 주의사항

1. 체계적 연구관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국가R&D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 최소한 공동관리규정은 정확히 숙지해야 함
- 부처별로 관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해당사업의 관리 기관(과학재단 등) 협의하여 추진
⇒ 2008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제정되어 교과부 R&D사업에 대한 통일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주요 규정의 적용시점이 2009. 1.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함.

2. 기술실시계약 전에 반드시 소관사업의 관리규정 확인

- 기술료 산정기준이 부처별로 다르므로
-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에 소관사업의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해당사업의 관리 기관(과학재단 등) 협의하여 진행

29

한국과학재단

VI. 국가R&D 지재권 관리 주의사항

3. 기술실시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맞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 특허등록 원부를 조회하면 전용실시권 설정여부 파악 가능

4. 개인명의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자 교육

5.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기술료감면승인을 받아 추진

30

한국과학재단

VI. 국가R&D 지재권 관리 주의사항

6. 국가R&D 성과물의 특허출원 시는 반드시 국가지원 성과물임을 기재해야 함

- 특허출원서에 '과제번호', '지원부처명', '연구과제명'을 기재해야 함 (공통관리규정 제15조제7항)

<특허법시행규칙 서식14(특허출원서) 내용 중>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2007. 1. 1. ~ 2007. 12. 31.

감사합니다 !